P - 50 - 2012

유해 폐기물 취급 및 비상대응에 관한 기술지침

2012. 7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O 작성자: 김 기 영
- O 개정자 : 한 우 섭
- O 제·개정 경과
  - 2010년 10월 화학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  - 2012년 7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- O 관련 규격 및 자료
  - 미국 OSHA의 Report No. OSHA 3114-07R "Hazardous Waste Operations and Emergency Response", 2008
  - 미국 29 CFR1910.120 "Hazardous Waste Operations and Emergency Response"
- O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: 2012년 7월 18일

제 정 자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P - 50 - 2012

# 유해 폐기물 취급 및 비상대응에 관한 기술지침

# 1. 목적

이 지침은 유해 폐기물 취급 및 비상대응 시에 근로자 및 관계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.

# 2. 적용범위

본 지침은 다음의 사업장에 적용된다.

- (1) 정리 정돈되어 있지 않은 유해위험물질의 청소에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
- (2) 유해 폐기물의 처리, 저장 및 폐기 설비(Treatment, storage and disposal, 이하 "TSD 설비"라 한다.)에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
- (3) 유해위험물질의 누출(사고에 의한 누출은 제외) 시에 비상대응에 근로자가 참여하는 사업장

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방제설비운용 (Clean-up operation)"이라 함은 근로자·주민의 안전 및 환경보존을 위하여 유해위험물질을 제거, 가둠, 소각, 중화, 안정화, 청소 또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설비를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.
  - (나) "유해위험 물질 (Hazardous substances)"라 함은 「유해화학물질관리법」 등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.
  - (다) "유해 폐기물 (Hazardous waste)"라 함은 「폐기물관리법」 등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P - 50 - 2012

# 4. 방제설비운용 사업장의 유해 폐기물 처리 및 비상대응

## 4.1 안전보건 프로그램

- (1) 유해 폐기물을 처리·취급하는 사업장은 안전 및 보건 관련 위험을 확인, 평가 및 제어하고 비상대응절차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- (2) 안전보건 프로그램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.
  - (가) 조직
  - (나) 작업계획
  - (다) 작업장에 적합한 안전보건 계획
  - (라) 교육훈련 프로그램
  - (마) 의학적 조치 프로그램
  - (바) 운전절차 등
- (3) 안전보건 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하며 근로자 및 협력업체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.

#### 4.2 조직

- (1) 조직도에는 임무와 책임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.
- (2) 조직도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 - (가) 모든 유해 폐기물 설비의 운용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총괄 관리 책임자.
  - (나)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·실행하고 책임을 지는 안전보건 관리자.
  - (다) 설비의 운용에 필요한 사람 및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.

#### 4.3 작업계획

(1) 작업계획은 사업장의 핵심 요소로서 근로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수단이다.

P - 50 - 2012

- (2) 작업계획에는 업무내용 및 목적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.
  - (가) 운전절차
  - (나) 담당 업무, 목적 및 실행 방법
  - (다)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인력
  - (라) 교육훈련, 의학적 조치 등의 실행에 필요한 절차

### 4.4 작업장 특성 파악 및 분석

- (1) 작업장 특성 파악 및 분석은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보건절차를 확정하는 절차의 일부이다.
- (2) 작업장 특성 파악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안전보건 계획을 작성하는데 반영한다.
- (3) 작업장 특성 파악에 대한 1차 평가는 운전에 들어가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.
- (4) 적절한 설계 및 개인보호구를 선정하기 위한 상존하는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세한 2차 평가를 실시한다.
- (5) 2차 평가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.
  - (가) 생명 및 건강에 즉시 영향을 주는 조건
  - (나) 근로자에게 심하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조건(밀폐공간출입, 화재·폭발 가능성 등)
  - (다) 사업장의 위치 및 규모
  - (라) 기후 조건
  - (마) 사업장의 접근성

#### 4.5 안전보건 계획

(1) 안전보건 계획은 사업장의 유해·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제어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.

P - 50 - 2012

- (2) 안전보건 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.
  - (가) 각 업무 별 위험요인 분석
  - (나) 근로자 교육 및 훈련
  - (다) 개인보호구
  - (라) 의학적 조치
  - (마) 노출 모니터링
  - (바) 오염물질제거 절차
  - (사) 비상대응계획
  - (아) 밀폐공간출입 절차
  - (자) 누출 오염

#### 4.6 교육훈련 프로그램

- (1) 교육훈련은 안전보건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.
- (2) 교육훈련은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관리자를 포한한 모든 근무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.
- (3) 교육훈련 내용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최소한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.
- (4) 근로자는 자기의 업무와 책임에 관련한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.

# 4.7 의학적 조치

- (1) 안전보건 계획에 따라 의학적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(2) 다음과 같은 근로자에게 의학적 조치를 실시한다.
  - (가) 1년에 30일 이상 허용노출농도 이상의 유해위험물질 또는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

P - 50 - 2012

는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

- (나) 사업장 내에서 1년에 30일 이상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는 근로자
- (다) 허용노출농도 이상의 유해 폐기물에 예상하지 못한 노출 또는 비상시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
- (라) 현장에서 유해위험물질의 비상대응 책임이 있는 근로자
- (3) 의학적 조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아야 한다..
- (4) 의학적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.

#### 4.8 개인보호구 등

- (1)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허용노출농도 이하에서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설비를 설치·유지하거나 작업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.
- (2) (1)항의 방법으로 근로자가 유해위험물질에 폭로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는 개인보호구 지급 프로그램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- (3) 개인보호구 지급 프로그램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 - (가) 보호구 선정 및 사용 설명
  - (나) 유지·보수 및 보관
  - (다) 오염물질 제거 및 폐기
  - (라) 훈련 및 적절한 조정 방법
  - (마) 입고 벗는 방법
  - (바) 검사 방법
  - (사) 사용 제한 등

# 4.9 노출 모니터링

P - 50 - 2012

- (1) 대기의 오염은 근로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노출 모니터링을 주 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- (2) 모니터링 주기 및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.

#### 4.10 드럼 및 용기의 취급 및 표지

- (1) 유해위험물질을 보관하는 드럼 또는 용기 취급 시에는 화재·폭발, 증기 생성 및 물리적 신체 손상 등의 위험이 있다. 그러므로 드럼 또는 용기 취급에 관한 절차를 작성·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한다.
- (2) 드럼 및 용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 방법 및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.

## 4.11 오염물질 제거 절차

- (1) 오염물질 제거절차도 안전보건 계획의 일부분으로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- (2) 현장 안전보건관리자는 근로자의 오염물질 제거상태 및 오염된 근로자의 옷 및 개인 보호구의 오염물질 제거 또는 폐기 등을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.
- (3) 보호의 및 개인 보호장비 등은 오염물질 제거, 청소, 세탁, 유지·보수 및 교체 등을 실 시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#### 4.12 비상대응

- (1) 비상조치계획을 안전보건 계획의 일부분으로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- (2)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 - (가) 개인별 임무 및 의사소통 절차
  - (나) 비상상황의 인지 및 예방
  - (다) 비상응급조치
  - (라) 현장 근로자에게 경보하는 방법 또는 절차

## P - 50 - 2012

- (마) 안전한 피난 거리 및 장소
- (바) 현장 보안 및 제어
- (사) 오염물질 제거 절차
- (아) 대응 평가 및 보완 절차
- (자) 개인보호구 및 비상 장비
- (차) 피난경로 및 절차
- (카) 현장의 기후 조건
- (타) 사업장 배치도
- (파) 사고보고 방법 및 절차

# 4.13 임시 작업장의 위생시설

- (1) 임시 작업장에는 식수와 컵을 준비하여야 한다.
- (2) 임시 작업장에는 샤워시설 및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# 5. TSD 설비의 운용 및 비상대응

## 5.1 안전보건 프로그램

- (1) 사업장에는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- (2)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프로그램은 설비에서의 유해·위험 요인을 확인, 평가 및 제어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(3) 안전보건 프로그램은 다음 사항을 최소한 포함하여야 한다.
  - (가) 비상대응절차
  - (나) 현장 분석
  - (다) 기술적인 유해·위험 제어 방법

P - 50 - 2012

- (라) 최대노출범위
- (마) 유해 폐기물 취급 절차
- (바) 신기술의 활용

# 5.2 의사소통 프로그램

- (1) 효과적인 의사소통 프로그램은 TSD 설비의 운용에 필요한 핵심요소 중 하나이므로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- (2) 이 프로그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(가) 화학물질의 표시 및 표지 관리
  - (나)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비치
  - (다) 프로그램에 대한 근로자의 교육 등

## 5.3 기타

- (1) 의학적 조치, 오염물질 제거 등은 4.7 항 "의학적 조치", 4.8 항 "개인보호구 등" 및 4.11 항 "오염물질 제거절차"를 준용한다.
- (2)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4.6 항 "교육훈련 프로그램"을 준용한다.
- (3) 비상대응은 4.12 항 "비상대응"을 준용한다.
- 6. 유해위험 물질의 누출 시에 비상대응에 근로자가 참여하는 사업장의 운용 및 비상대응
- 6.1 비상대응
  - (1) 비상조치계획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  - (2) 비상조치계획에는 최악의 누출 시나리오 및 4.12항 (2)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P - 50 - 2012

## 6.2 교육훈련

- (1) 비상대응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자기의 임무 및 기능에 대하여 비상대응에 참여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.
- (2) 교육훈련 내용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최소한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.

# 6.3 의학적 조치 및 개인보호구

- (1) 비상대응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.
- (2) 신체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.
- (3) 비상대응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는 비상대응에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.

## 6.4 비상대응 완료 후 조치

- (1) 비상대응이 완료된 후에는 청소를 하여야 한다.
- (2) 비상대응이 완료된 후의 청소는 유해위험물질이 누출된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그 사업 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(3) 누출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비상대응이 완료된 후의 청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않고 청소에 참여할 수 있으나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가 청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